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

(박상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0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박상혁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경훈,
김영철, 김재진, 김종길,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
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
소영철, 신동원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
이숙자, 이종환, 장태용,
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이 모색되고, 영유아교육·보육 통합(유보통합) 추진으로 유아교육 체계 전반의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유아교육이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해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7조)
- 마. 교직원의 연수·교육과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
바.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사. 영유아교육·보육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아.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유아교육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 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아교육법」 시행 및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,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아교육 시행에 따른 보호자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,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 가정의 유아가 유아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유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) 교육감은 법 제3조의2제7항과 법 시행령

제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유아교육 진흥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유아교육 현황 및 진흥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
3.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
4.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와 보호자 교육 방안
5.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6.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사립유치원 지원) ①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과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조건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, 보고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교육과정)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·교구의 개발과 보급,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, 기타 교수·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인성교육진흥법」에 따라 시행되는 인성교육

2.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아동복지법」 등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교육
3. 「장애인복지법」 등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
4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시행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
5.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 반영해야 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기타 분야의 관련 교육

제7조(방과후 과정)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놀이와 쉬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교직원 연수 등)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연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(전자학습)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보호자 교육) 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,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(전자학습)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유치원 평가)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주기, 기준, 방식, 평가결과의 공개와 활용 등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.

제11조(유보통합) ① 교육감은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(이하 “유보 통합”이라 한다)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, 교직원 임금, 시설 등에 있어 유치원과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, 대학 및 연구기관, 공공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4조(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)	×	○ 유아교육발전 계획 수립은 관련직원을 통해 수립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
2	제5조(사립유치원 지원)	×	○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'24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기 추진1)하고 있으며, '25년 사립유치원 재정 예산(안) 참고자료로 제시함
3	제6조(교육과정)	×	○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함
4	제7조(방과후 과정)	×	○ 방과후 과정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 기 추진2)
5	제8조(교직원 연수 등)	×	○ 교직원 직무연수 및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기 추진
6	제9조(보호자 교육)	×	○ 보호자에게 양육방법, 보호자의 역할 등 기 추진
7	제10조(유치원 평가)	×	○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기 추진
5	제11조(유보통합)	△	○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추진하고 있음 다만,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방법 규모 등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6	제12조(협력체계 구축)	×	○ 협력체계 구축은 통상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함

1) 격차해소를 위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으로 기 추진 (「2024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」 2024.2.)

○ 지원조건 : 「유아교육법」 제25조(유치원 원비)에 따른 '원비 인상률 상한제' 준수 및 「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」 추진과제 'K-에듀파인' 및 '처음학교로' 사용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실시

○ 재정지원 항목

-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(사립유치원 교원 정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원장, 원감, 담임교사, 영양교사)
- 30일 이상 육아휴직 교육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원
- 정규 교원의 수업 결손으로 대체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강사비 일부 지원
- 유아 모집·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, 원비 안정화 등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유치원
- 신용카드로 학부모부담금 결제 진행한 유치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

※ 2025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예산(안)

- 사업명(예산) :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 지원	'24년 39,595,200천원	→ '25년(안) 43,918,800천원
- 사업명(예산) :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	'24년 14,369,760천원	→ '25년(안) 14,076,000천원
- 사업명(예산) :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지원	'24년 582,720천원	→ '25년(안) 582,720천원
- 사업명(예산) : 유아학비부대경비	'24년 1,000천원	→ '25년(안) 8,840천원

2)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지원 실적 및 계획 *출처 :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자료(2024.2.)

○ 2023년도 추진실적

-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인력비 및 운영비 지원: 159개원, 원당6,000천원
-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선정 및 지원: 1학기 11개원, 2학기 13개원

○ 2024년 추진계획

- 맞춤형 돌봄 지원을 위한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
- 연중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운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은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내용으로 일부 기추진³⁾하고 있는 사업임. 다만 안 제11조(유보통합)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 해소에 대한 규정은 기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(확대) 운영에 따라 사업규모 등이 정해지는 경우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l004@seoul.go.kr